

2005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노동부 고시개정 안내

● 개정 고시명

- I. 노동부고시 제2004-64호('04.12.31)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II. 노동부고시 제2004-65호('04.12.31)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III. 노동부고시 제2004-70호('04.12.31) 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IV. 노동부고시 제2004-71호('04.12.31)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V. 노동부고시 제2004-73호('04.12.31) 2005년도 고용보험법적용제외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

● 적용기간: 2005.1.1 ~ 12.31

I. 노동부고시 제2004-6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31일
노동부장관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1.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별첨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3.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 26700-405, 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기구제조업	10
석탄광업	436	수제품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3	기타제조업	16
채석업	155		29
석회석광업	56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제염업	32		8
기타광업	60	4. 건설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61		31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0	철도궤도 및 삽도운수업	6
담배제조업	8	자동차여객운수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9	화물자동차운수업	6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2
제제 및 베니어판 제조업	59	항공운수업	
목재품 제조업	43	운수관련 서비스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3	창고업	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6	통신업	19
인쇄업	18		9
화학제품 제조업	19	6. 임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벌목업	489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6	기타의 임업	28
고무제품 제조업	22		
도자기제품 제조업	26	7. 어업	148
유리제조업	20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8. 농업	19
시멘트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45	9. 기타의 사업	
금속제련업	8	농수산물유통판매업	22
금속재료품 제조업	36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도금업	24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기계기구 제조업	28	건설기계관리사업	76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3
전자제품 제조업	6	기타의 각종사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38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19	교육서비스업	7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27	10. 금융 보험업	4

※ 해외파견업 : 16/1000

II. 노동부고시 제2004-6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III. 노동부고시 제2004-7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폐업 ·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 임금 및 그 적용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군	산업분류	월단위(원)	시간단위(원)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日电)	2,765,000	12,230
2	금융 및 보험업(金)	2,316,000	10,250
3	광업(礦), 통신업(電)	1,591,000	7,040
4	운수업(運), 제조업(製),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公), 도·소매업(販), 사업서비스업(事)	1,458,000	6,450
5	농업 및 임업(農), 어업(漁), 건설업(建), 공공행정·국방(公), 가사서비스업(家), 국제·외국기관(國)	1,379,000	6,100
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娛), 숙박 및 음식점업(宿)	1,220,000	5,400
7	부동산 및 임대업(不),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衛)	1,117,000	4,940
8	교육 서비스업(教)	994,000	4,4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IV. 노동부고시 제2004-71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2005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4,036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V. 노동부 고시 제2004-73호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2005년도고용보험법적용제외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고시

1.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
 - 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 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산정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2. 2004년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이월되는 건설공사는 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계속 적용된다.
3.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안내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2005년 1월 4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41호로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고시된 내용입니다.

- 다음 -

1. 신기술명

가. 저압 수배전반용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술

○ 지정번호 : 제27호

○ 신기술 내용

- 저압 수배전반용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술

나. 뇌 보호 시스템의 트라이앵글 공법

○ 지정번호 : 제28호

○ 신기술 내용

-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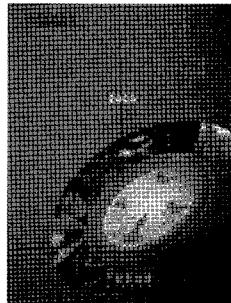
- 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

-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과 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 및 서지 프로텍터를 이용한 뇌 보호 공법

※ 문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대한전기협회(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판례 100선



행정자치부는 최근 10개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한 소송사건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자료를 정선하여 '재난·안전' 판례 100선'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재난·안전 판례 100선은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봉괴·추락사고, 화재사고, 침수·매몰피해, 농작물·생물피해, 교통사고, 익사사고, 가스폭발, 감전사고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기되었던 손해배상 및 구상청구사례를 중심으로 수록됐다.

행정자치부는 평상시 지방자치단체 재난담당공무원에게 본 사례를 속독케 하여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재난발생으로 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함은 물론 재난·안전관련한 소송업무 처리에도 참고토록 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신속한 대응과 업무처리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http://mogaha.go.kr>)를 통해 안전관리정책 등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판례 검색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접속 지방행정정보 안전정책 민방위안전정책에서 검색

<민방위안전정책담당관실/(02)3703-5906>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이 2005년 2월 18일에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통합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요약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를 소방설비기사로 통합

현 행	개 정 안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설비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변경

종목명	현 행		개 정 안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필기	1.소방원론 2.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 3.소방관계법규 4.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1.소방원론 2.소방유체역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회로 3.소방관계법규 4.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실기	소방기계시설의 설계 및 시공실무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필기	1.소방원론 2.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 3.소방관계법규 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실무
	실기	소방전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실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분야)	필기	1.소방원론 2.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 3.소방관계법규 4.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1.소방원론 2.소방유체역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회로 3.소방관계법규 4.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실기	소방기계시설의 설계 및 시공실무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분야)	필기	1.소방원론 2.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 3.소방관계법규 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실무
	실기	소방기계시설의 설계 및 시공실무	

국가공인자격증 현황 안내

□ 자격의 정의

국가자격 -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함(자격기본법 제2조2항)

공인자격 -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7조1항)

민간자격 -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함(자격기본법 제2조3항)

□ 국가공인자격증 현황

소관부처	자격종목	자격관리자	유효기간	등급	연도
재정경제부(4)	신용분석사	한국금융연수원	04. 120 ~ 07. 1.19		2000
	대출심사역	"	04. 120 ~ 07. 1.19		2000
	국제금융역	"	04. 120 ~ 07. 1.19		2000
교육 인적자원부(7)	자산관리사	"	05. 1.5 ~ 08. 1. 4		2005
	한자능력급수	한국어문화	05. 2.10 ~ 08. 2. 9	1~3급	2005
	실용영어	(사)한국외국어평가원	04. 1.27 ~ 06. 1.26	1~3급	2001
	실용한자	"	04. 1.27 ~ 06. 1.26	1~4급	2004
	TEPS영어능력검정	(제)TEPS관리위원회	05. 2.10 ~ 08. 2. 9	1~2급	2005
	한자실력급수	(사)한자교육진흥회	04. 1.27 ~ 06. 1.26	사범, 1~3급	2004
	한자급수자격검정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04. 1.27 ~ 06. 1.26	사범, 준1, 준2급	2004
행정자치부(3)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주)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	04. 1.27 ~ 06. 1.26	ESP-성인1,2급	2004
	옥외광고사	한국광고사업협회	03. 2.6 ~ 08. 2. 5	2급	2002
	정책분석평가사	한국정책능력진흥원	05. 2.14 ~ 08. 2.13	1~2급	2005
산업자원부(7)	행정관리사	(사)한국행정관리협회	04. 2.1 ~ 09. 1.31	1~3급	2004
	산업기계정비사	대한상공회의소	00. 12.22 ~ 05. 12.21		2000
	사출금형제작사	"	00. 12.22 ~ 05. 12.21		2000
	프레스금형제작사	"	00. 12.22 ~ 05. 12.21		2000
	전기계측제어사	"	00. 12.22 ~ 05. 12.21		2000
	무역영어	"	00. 12.22 ~ 05. 12.21	1~4급	2000
	샵마스터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04. 1.17 ~ 09. 1.16	3급	2004
	지역난방설비관리사	한국열관리사협회	05. 2.1 ~ 07. 1.31		2005
	E-Test(E-Professionals)	삼성SDS(주)	03. 2.17 ~ 07. 2.16	1~4급	2000
정보통신부(11)	정보시스템감리사	한국전산원	03. 2.17 ~ 07. 2.16		2000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주)피씨티	03. 2.17 ~ 07. 2.16		2000
	인터넷정보검색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03. 2.17 ~ 07. 2.16	1·2급	2000
	리눅스마스터	"	05. 1.15 ~ 07. 1.14	1·2급	2005
	네트워크관리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04. 1.20 ~ 08. 1.19	2급	2001
	PC정비사	"	05. 1.15 ~ 07. 1.14	1·2급	2005
	정보기술자격시험(ITQ)	한국생산성본부	04. 1.20 ~ 08. 1.19	A~C급	2001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NIT)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5. 2.17 ~ 09. 2.16		2002
			05. 2.17 ~ 09. 2.16	초, 중, 고	2002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04. 1.20 ~ 06. 1.19	2급	2004
보건복지부(2)	정보보호전문가(SIS)	한국정보보호진흥원	05. 2.17 ~ 07. 2.16	1급	2005
	점역·교정사	한국시각장애인협회	02. 4.1 ~ 07. 3.31	1~3급	2001
	병원행정사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02. 4.1 ~ 07. 3.31		2001

소관부처	자격증목	자격관리자	유효기간	등급	연도
노동부(13)	기계전자제어사	대한상공회의소	00.12.22 ~ 05.12.21		2000
	치공구제작사	"	00.12.22 ~ 05.12.21		2000
	CNC기계절삭가공사	"	00.12.22 ~ 05.12.21		2000
	기계설계제도사	"	00.12.22 ~ 05.12.21		2000
	기계및시스템제어사	"	00.12.22 ~ 05.12.21		2000
	공작기계절삭기공사	"	00.12.22 ~ 05.12.21		2000
	자동화설비제어사	"	00.12.22 ~ 05.12.21		2000
	산업전자기기제작사	"	00.12.22 ~ 05.12.21		2000
	컴퓨터운용사	"	00.12.22 ~ 05.12.21		2000
	가구설계제도사	"	00.12.22 ~ 05.12.21	1~4급	2000
	문서실무사	한국정보관리협회	00.12.22 ~ 05.12.21	1~3급	2000
	펜글씨검정	대한글씨검정교육회	00.12.22 ~ 05.12.21	전산세무회계1,2급	2000
	전산세무회계	한국세무사회	02.1.17 ~ 07. 1.16	1·2급	2001
경찰청(1)	열쇠관리사	한국열쇠협회	05. 1. 3 ~ 08. 1. 2	기술자	2005
조달청(1)	수목보호기술자격	한국수목보호연구회	05. 1.15 ~ 08. 1. 2	1·2급	2005
	분재관리사	한국분재조합	05. 2. 1 ~ 08. 1.31	2급	2001
	구매·자재관리사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04. 12. 27 ~ 06.12.26		2004
7부처3청	51종목	31기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294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2일
산업자원부 장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단계부터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79호, 2004. 12. 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안)

- 1)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기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승강기 인증제도의 체계를 정함
- 2) 보수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억원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함
- 3) 승강기사고 발생 시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 및 합리적인 판정을 위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는 등의 체계를 마련함
- 4) 현재 월 1회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체점검 주기를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보수계약서에 점검주기를 명시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점검주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함

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 1)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안전부품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판매 후 제공해야 하는 승강기 보수용 부품을 정의함
- 2)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신청 및 인증 방법·절차를 규정함
- 3)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에 대하여 매 2년마다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과 제조업자의 자체검사에 대한 실시기록내용을 규정함
- 4) 보수업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방법을 정함
- 5) 승강기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를 사고로 정의하고 사고조사를 합리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사고조사반 구성에 대해 규정함
- 6) 국가의 보조에 의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승강기를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산업기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산업기계과장

○ 주 소 : (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 : 02)2110-5625, 팩스 : 02)503-9474, 전자우편 : yuyh@mocie.go.kr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2005년 2월 22일에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의 대상 및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우수감리원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감리·설계자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허위로 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설계감리대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확대
-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도록 함
- 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을 중·소규모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
- 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허위로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하는 행위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마. 발주청으로 하여금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시공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바.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감리, 소방감리, 전력시설물 감리, 통신감리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
- 사.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의 대상·실시시기,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요건, 지정 취소절차 등을 규정
- 아. 감리전문회사 등록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504-9022~3, 팩스 02-504-6127)